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 改善에 關聯하여

趙 正 守 (本協會 特保 1部 次長)

1. 概 況

우리나라의 經濟가 輸出主導型으로 轉換하면서 急成長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保稅區域內 搬出入되는 輸出入貨物의 物動量도 增大하여 罹災發生時에 被害額도 大型化하고 있다.

이들 被害를 制度的으로 補償하기 위하여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가 70年度에 施行된 以後 年度別 付保現況을 살펴보면 70年度 890,867백만원에 對하여 81,142백만원 付保하여 輸出入金額 全體의 約 9.1%, 71年度 1,291,288백만원에 119'953백만원 付保되어 9.3%, 72年度 1,650,148백만에 193,351백만원 付保되어 11.7%, 73年度 2,963,724백만원에 330,729백만원에 付保되어 11.2%, 74年度 5,475,105백만원에 435,985백만원 付保되어 8.0%, 76年度 7,997,068백만원에 946'405백만원 付保되어 11.8%, 77年度 6月末 現在 4,228,375백만원에 708,719백만원이 付保되어 16.8%으로 각각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總輸出入 物動量에 比하여 불과 10%程度로 保稅保險에 付保되었을 뿐

약 90%程度는 付保對象에서 除外되어 있지 않으나 反問할 수 있겠으나 이는 첫째로 付保對象 除外品目의 物動量을 考慮하지 않았다는 點이며 즉, 現行 特約書上 付保對象除外品目を 簡單히 살펴보면, 씨멘트, 원목, 원유, 철강等輸出入貨物의 大宗을 이루고 있는 貨物과 둘째로 海上積荷保險(輸入貨物), 動産綜合保險等 其他 다른 保險으로 付保되어 있을 경우에 重複保險으로써 除外品目, 셋째로 輸出增大에 對備 貨物運送이 大型化내지 迅速化하기 爲하여 Container로 保稅運送되는 貨物, 넷째로 現行保稅保險의 適用對象倉庫는 營業用藏置場에 局限하고 있으므로 因한 自家藏置場, 企業의 系列倉庫에 搬入되는 貨物等이 除外되고 있는 點等 全體輸出入貨物의 約 80% 以上을 占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반면 나머지 모든 貨物이 保稅貨物로서 付保對象임을 考慮할때 대부분의 貨物이 付保되고 있는 것은 事實이다. 한편 同貨物의 舉收保險料 및 罹災發生 狀況을 別表에서 簡單히 살펴보면 70年度 舉收保險料 31백만원, 71年度 84백만원, 72年度

101백만원, 73年度 138백만원 74年度는 211백만원, 75年度 236백만원 76年度 364백만원 77年度 9月 現在 400백만원 舉收된 반면 保險金支給은 76年度 2件에 3,257백만원을 支給하므로써 罹災率 208.1%을 點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制度的으로 保稅區域內에 搬出되는 모든 保稅貨物이 빠짐없이 付保될 수 있는 方法은 輸出入 通關節次上에 保險加入 義務化로 할수 있도록 法的 뒷 받침이 있으면 그 以上 바람직한 方法이 없겠으나 이와같은 方法을 強求하지 않는 限 現在주어진 與件에서 그동안 施行한 經驗을 토대로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改善에 臨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保稅貨物火災保險制度改善作業은 76年度 釜山大火를 契機로 하여 지난 5月財務部의 指示에 依據 第1次的으로 當協會 內부에 小委員會(業務部, 企劃調查部 特保1部 監査室)를 構成하여 6회의 會議을 거쳐 草案을 作成, 이를 原受會社 小委員會(第一, 東方, 高麗, 國際社)에 回符시켜 4次的 協議를 하여 火協의 草案을 土臺로 再調整 同

結果를 다시 3회의 原受社, 業務部長會議, 2次에 걸친 財務部, 國稅廳, 港灣廳 貿易協會 및 關稅協會等 關係機關會議를 거친 후, 結定된 案을 간사사인 東洋社를 통해 損害保險協會內에 있는 料率審議委員會에 回附하는 등 그 동안의 會議에 나타난 問題點들은 關係者들의 理解相衡에 의하여 難行을 거듭, 同制度改善案을 確定 財務部에 承認을 받아 施行하게 된 것이다.

2. 保稅保險制度的 背景 및 經緯

1970年 4월에 發生한 釜山 第2 埠頭火災의 被害額 350백만원을 政府가 補償하고 이를 契機로하여 保稅區域內에 搬入되는 모든 保稅貨物이 火災로부터 保護할 수 있는 大統領閣下의 特別指示에 따라 財務部가 付保方案을 作成, 經濟長官會議를 거쳐 同保險 開拓指示를 70年 4월에, 基礎書類認可를 5月, 倉庫設營人과 代理店契約締結을 8月, 代理店制度에서 委任契約制度로 75年 3월에 變更 施行하여 왔으며 한편 同保險制度가 政策保險의 一種으로서 施行하게 되었으나 이를 보다 確固한 基盤과 根據위에서 施行되기 위하여서는 法的 뒷받침으로서 特殊建物과 같이 付保義務化된 法律이 있었으면 하는 점과 特別關係 行政機關의 認識 不足等 여러가지 問題點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同保險은 保稅區域內에 搬出入되는 모든 貨物은 保險에 付保시켜 不意의 災害로부터 輸出入業者를 保護하려는 政府의 趣旨에 立却하여 볼 때 70年度 初般의 우리나라의 輸出入與件 即, 그 동안 貨物의 多樣化, 物動量의 增加等 經濟

與件이 너무나 많이 變하고 있었음에 不拘하고 同保險制度가 踏步狀態에 있음을 否定할 수가 없는 實情에 있었다. 특히 現行 委任 受任關係는 初期에 金融 pool과 各 保稅藏置物 設營人과의 代理店契約에 依하여 施行되어 오던 中 75年度 損害保險事業 經營刷新에 의하여 金融 pool이 火協에 統合되면서 從前의 代理店制度下에서 金融機關 및 保稅倉庫 設營主와의 同代理店 手數料 支給을 禁止시키므로서 金融機關 및 保稅倉庫 設營主와 委任契約를 締結하여 保險業務의 受任處理上의 必要費 또는 유익비를 財務部長官이 定하는 範圍內에서 支給하도록 하는 등 施行課程에 여러가지 與件變動으로 隨時 補完하여 왔다.

3. 同保險의 特徵

同保險의 特徵을 簡單히 살펴보면 가. 制度自體의 特徵

① 任意保險이 아닌 政策保險이며

② 自己를 爲한 保險契約이 아닌 第3者인 貨主를 爲한 保險契約이며

나. 保險契約 當事者의 特徵

① 倉庫 設營主가 火協의 受任者인 同時에 保險契約者이고, 貨主는 被保險者이며

② 受任者(保險者의 位置)와 保險契約者 및 倉庫設營主로서의 責任限界性

다. 契約締結의 方法의 特徵

① 一般火災保險과는 달리 請約書에 依한 保險契約이 아닌 日 日入庫報告書에 依하고 있으며, 保險證券을 發行치 않은 점.

② 責任開始時點은 保稅藏置場에 搬入과 同時에 責任開始하여

出庫 同時에 終了하며

③ 保險料를 契約締結時에 納入하는 것이 아니며 貨物의 出庫와 同時에 保險料請算을 하는 事後納入等을 들 수가 있다.

4. 問題點

同保險의 特殊性에서는 이미 言及된바와 같이 保稅保險이 70年度에 施行되어 現在에 이르는 동안에 나타난 問題點들을 簡單히 살펴보면

가. 制度上의 問題點

① 政策保險의 一種임에도 不拘하고 法的인 뒷받침이 결여되어 있으며 ② 倉庫設營主의 理解相衡 即, 保管業이 主業인 倉庫設營主는 貨物留置에 急急한 나머지 付保業務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③ 倉庫設營主의 責任 限界性不明確, 即 火協의 受任者인 同時에 貨主를 爲한 保險契約者의 位置에 있으며 ④ 火協의 受任者로서의 管理대만에 對한 責任限界 不明確.

나. 特約書의 未備

① 保稅藏置場의 概念 不明確 即, 現行 特約書 第2條에 保險의 目的을 保管하는 保稅區域倉庫 또는 其他 藏置場이라 規定함은 關稅法上 또는 特約書上 保稅區域倉庫 用語의 定義가 明確하게 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其他 藏置場이라함은 具體的으로 어떤 藏置場을 意味한 것인지 不明確하게 되어 있으므로 마치 設營主가 火協과 協約이 締結되지 않은 藏置場에 保管하는 모든 貨物까지 保險에 付保한 것처럼 誤認할 우려가 없지 않으므로서 罹災發生時에 保險의 目的을 保管하는 場所의 概念이 不

明確으로 인한 混雜을惹起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年度에 이와같이 規定한 것은 當時의 우리나라의 輸出入貨物의 物量이 그렇게 많지 않은 與件이라는 點을 考慮할 때 輸出入貨物은 반드시 保稅倉庫에 搬入될 수 있으므로 同規定만으로 充分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現在 우리나라의 輸出增大는 每年 平均約 40% 急伸長을 하고 있는 點을 考慮할 때 이와같은 與件에 맞추어 保稅保險制度의 運營내지 制度改善에 소홀히 한 點도 없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76年度 釜山 大火發生 直前까지만 하여도 輸出貨物의 경우 輸出의 于先政策에 依하여 適當한 場所에 일단貨物을 藏置하고 關稅法에 依하여, 他所藏置許可를 받아 輸出을 하던 方法에서 大火發生以後 釜山의 경우 管轄稅關에 依하여 他所藏置許可를 規制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過去 一定한 場所에서 繼續하여 他所藏置許可를 하던 藏置場은 關稅法에 規定한 特許藏置場으로 조건을 갖추어 許可를 받도록 行政의 尤도하는등 여러 가지 政策的 次元에서 規制를 하므로써 付保業務에도 相當한 協助를 아끼지 않고 있다.

② 保稅貨物의 定義의 不明確

特約書上에 나타난 用語를 검토하여 보면 特約書 本文에 保稅貨物이라고 하고 各條文에는 輸出入貨物 및 貨物이라고 用語를 同時에 表現하므로써 用語의 統一性이 缺如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保稅貨物의 定義를 料率에 關한 規定에 定義되어 있으며 輸出入貨物의 用語의 定義역시 전혀 規定되어 있지 않는點이다.

③ 保險契約의 成立時期와 責任開始: 特約書 第3條에 倉庫設營人은 保險契約請約書에 같은 保險의 目的인 輸出貨物의 出入庫 狀況을 別途로 定하는 日日出入庫 狀況表로 作成하여 稅關 特과 公務員의 確認을 받아 前日分을 翌일까지 火協에 送付하도록 하고 第4條에서는 責任은 藏置場에 貨物이 搬入된 때에 開始하며 搬出할 때 끝나는 것으로 各各 規定하고 있으므로 同一 貨物에 對하여 責任開始時點이 2個로 되어 있는 混雜을 惹起시키고 있는 點을 들 수가 있다.

④ 補償의 範圍

特約書 第8條에 輸出貨物의 경우 保險의 目的에 罹災가 生진 경우 火協에 報告되지 아니한 保險의 目的에 對하여는 特約第3條의 報告書에 記載된 마지막 搬入日後에 搬入된 貨物로서 罹災가 發生하기 前에 倉庫設營主의 帳簿 또는 카드에 記載되어 있거나 稅關特派公務員이 認定하는 것에 限하여 補償할 수 있도록 規定되어 있다. 指定保稅區域 내지 特許藏置場인 경우에는 第3者가 認定할 수 있는 貨物臺帳(管轄稅關應印이 찍혀있는 臺帳印)에 搬入되는 모든 貨物을 記載하고 同結果에 依하여 管轄稅關 내지 特派公務員의 確認을 받고 있으므로 信憑性 있는 資料로 利用할 수 있으나 他所藏置許可 對象倉庫인 경우에는 많은 問題點이 없지 않으므로 이를보다 明確하게 規定하여야 할 點을 들 수가 있다.

특히 第3條에 搬入報告書의 提出時에 特派公務員의 確認問題만하더라도 이는 現在 各管轄稅關의 人員부족에 依하여 特派公務員이 상주하고 있지 않으므로 事實上 搬出

入 報告書提出時에 반드시 確認을 받을 수 없는 現實에 비추어 볼 때 더욱이 他所藏置許可藏置場의 경우에는 各倉庫 設營人이 作成한 搬出入報告書 또는 其他帳簿等을 어느 程度 正確性을 期할 수 있을 것인지 하는 疑問과 罹災發生時補償의 範圍를 어떤 資料에 依하여 어떻게 設定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없지 않다.

다. 監督機關의 認識缺如

① 管轄稅關의 付保指導내지 同保險의 認識缺如로 인한 監督上의 소홀, 即 管轄稅關의 付保指導내지 監督은 管轄稅關의 人員부족으로 因하여 70年度에는 各倉庫에 特派公務員이 駐在함과 同時에 釜山 大火로 因한 認識等 여러 가지 要素가 作用하여 協助가 잘 되었으나 그동안 時間의 흐름과 同時에 擔當者들의 認識不足 특히 一線對民關係에 가장 접촉이 많은 一線稅關의 立場에서 볼 때 是은 人事移動에 依한 擔當者들의 同保險制度 未把握 輸出貨物의 增加에 따른 稅關公務員의 人員不足으로 因하여 各保稅倉庫에 駐在하고 있던 特派公務員을 撤收시키고 巡察制度로 轉換함에 따른 監督의 여러가지 어려움點이 없지 않았으며 一部 擔當者들은 稅關이 火協의 保險料를 받아주는 곳이나 하고 反問할 程度로 同保險制度를 認識하지 못하는 實情임은 否定할 수 없다. 그러나 76年 釜山 大火를 契機로 하여 어느정도 認識을 달리하고 付保에 어느 程度 協助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좋은 現象이라 할 수 있겠다.

② 港灣管理廳 및 埠頭管理協會의 同保險運營管理의 未洽